

「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

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이상호 의원 외 19인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상 위탁 근거 문구를 일치시키고,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서 기 규정한 수탁자의 책무, 지도·감독, 위탁계약의 취소·해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법적 실익을 찾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‘관리 및 운영’의 위탁을 ‘운영위탁’으로 변경하고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(안 제5조)
- 제7조(수탁자의 의무) 조문 삭제
- 제9조(감독) 조문 삭제
- 제10조(위탁계약의 해지) 조문 삭제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9조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4조, 제16조, 제21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공단동에 위치한 구미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¹⁾에 따라 공동세탁소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‘운영의 위탁’으로 규정하여 법적 체계의 일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
- 또한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규정된 수탁기관의 의무, 위탁의 취소,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 등 중복되는 규정의 삭제로 행정의 효율성·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1) 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

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※ 별표 - 참고자료(2024. 4. 기준)

■ 구미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(my구미클리닝) 현황

- 위 치 : 구미시 산호대로 185, 지하 1층(근로자권익지원센터)
- 규 모 : 312m²(지하 1층)
- 시설현황 : 세탁기 3대(50kg 2대, 20kg 1대), 건조기 3대(80kg) 등
- 개 소 일 : 2021. 7. 15.
- 설 치 비 : 179백만원(도비 54, 시비 125)

■ 위탁 운영현황

- 위탁기간 : 2021. 7. 14. ~ 2024. 12. 31.
- 위 탁 금 : 302백만원 ('23) 279 ('22) 245 ('21) 300
- 수탁기관 : 한국노총 구미지부
- 운영인력 : 팀장(1) : 박순용 / 직원(5) : 회계 1, 배송 2, 세탁 2
- 이 용 료

구 분	가 격	비 고
하절기(4월~9월)	1벌당 500원	* 기본수선 무료 (단추, 해집 수선 등) * 이름표 오버로크 무료
동절기(10월~3월)	1벌당 1,000원	

■ 운영실적

연 도	이용업체 (누적)	상 의	하 의	기 타	합 계	
					개 수	벌 수
2021년	55	6,084	2,159	1,572	9,815	4,907
2022년	93	37,024	15,700	2,334	55,058	27,529
2023년	130	50,560	22,900	3,938	77,398	38,699
2024년 (1분기)	140	15,249	5,903	1,655	22,807	11,403

* 출처: 구미시청 노동복지과